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063
----------	-------

발의연월일 : 2026. 4. 2.

발 의 자 : 복기왕 · 어기구 · 이상식
김우영 · 이연희 · 임호선
박용갑 · 최혁진 · 추미애
조계원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등 에너지복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에너지복지 제도는 소득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가구 단위의 개별적 접근에 머물러 있어 지역별 취약 요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에너지복지 사업의 생활권 단위 접근으로의 전환 등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을 지정하고,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 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8 신설).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 빈곤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의 지정 현황 및 관련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16조의9 신설).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이란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이 곤란한 지역으로서 제16조의8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16조의2제2항 본문 중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을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및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읍·면·동 단위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의8 및 제16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8(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
2. 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이 현저히 낮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3. 에너지공급설비가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이용 소외지역 지정의 사유가 소멸하거나 지역 여건이 현저히 개선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 이 경우 에너지 자립마을은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에서 주민이 참여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등을 생산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마을을 말한다.
2. 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3.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사업

4. 에너지 공급 시설 확충 사업

5.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국가는 제4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⑦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의 지정·지정 해제의 기준·절차 및 제4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9(에너지 빈곤 관련 정보의 공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복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관한 정보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정보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에너지 빈곤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에너지 빈곤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범위·절차 및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의 지정 현황 및 관련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간이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간이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⑤ 제2항 및 제3항-----

제16조의8(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

2. 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이 현저히 낮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3. 에너지공급설비가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이용 소외지역 지정의 사유가 소멸하거나 지역 여건이 현저히 개선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

다.

1.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

이 경우 에너지 자립마을은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에서 주민이 참여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등을 생산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마을을 말한다.

2. 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3.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사업

4. 에너지 공급 시설 확충 사업

5.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국가는 제4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신 설>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⑦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의 지
정·지정 해제의 기준·절차
및 제4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16조의9(에너지 빈곤 관련 정
보의 공유) ① 기후에너지환경
부장은 에너지복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에 관한 정보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
급 인증에 관한 정보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에너지 빈곤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에너지 빈곤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범위·절차 및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의 지정 현황 및 관련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